|  |
| --- |
| 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2022. 1. 21.> |
| **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**  건축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.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공 사 명 |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244-9(예시) | | | | 공사 개시 예정일시 | 00-00-00 | 공사 준공 예정일 | 00-00-00 |   1. 건축물 공사 주변에서의 위해가 우려되는 도시가스배관 시설의 범위  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번호 | 가스 시설 | 압 력 | 재 질 | 호칭 지름 | 연 장 | 비 고 | | 1 |  |  |  |  |  |  | | 2 |  |  |  |  |  |  |   2. 도시가스사업자와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협의내용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구 분 | 안전조치해야 할 내용 | 완료예정일 | 비고 | | 도시가스사업자 | 도시가스배관 마감 안전조치/잔류가스 제거 |  |  | | 건축물 공사 시행자 |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확인 후 공사시행  (철거업체 선정 및 참관 요청) |  |  |   3.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 및 참관 시 확인 사항  - 안전조치 및 참관요청 시 도시가스배관 마감조치 및 잔류가스 제거 확인  4. 그 밖의 필요사항  -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목적 외의 사용 금지  - 단지 내·외에서의 모든 굴착공사(파일박기/가림막/방음벽/비계설치 등) 착공 전 **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(EOCS, 1644-0001)**에 접수하고, 도시가스사업자 참관하에 가스배관의 위치 확인 후 공사 시행  5. 첨부서류: 건축물 공사장 주변 도시가스배관 배치도면 1부  년 월 일  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건축물 공사 시행자 : | 환경산업 | | 성명 : 홍길동 | (서명 또는 인) | |  | 연락처: | 000-0000-0000 | FAX : | | | 도시가스사업자 : | JB㈜ | | 성명 : 000 | (서명 또는 인) | |  | 연락처: | 041-530-0000 | FAX :041-530-1890 | |   **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에 의거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/개축/대수선/철거공사를 하려는 경우, 공사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(과태료)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** |
|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 |
|  |